

소독의 기준(제35조제1항,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)

1.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, A형간염의 경우
가. 분뇨, 토사물(吐瀉物)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·천·종이 등
나. 시체
다.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, 침구, 운반기구 등
라.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, 침구 등
마.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,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, 기구, 서적 등
바. 병실의 바닥 등
사. 우물, 주방, 주방기구, 물통 등
아. 화장실, 수세변기구, 쓰레기통,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
자.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
차.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
카.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
2. 성홍열, 디프테리아,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
가. 콧물, 가래침, 고름,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, 천, 종이 등
나. 시체
다.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, 침구, 운반기구 등
라.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, 침구 등
마.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,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, 기구, 서적 등
바. 병실의 바닥, 기구, 벽 등
사.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
아.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
자.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
3. 발진티푸스의 경우
가. 콧물,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·천·종이 등
나. 시체
다.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, 침구, 운반기구 등
라.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, 침구 등
마. 병실의 바닥 등
바.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
사.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
아.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
자.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

4. 페스트의 경우

- 가. 혈액, 콧물, 가래침,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·천·종이 등
- 나. 시체
- 다.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, 침구, 운반기구 등
- 라.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, 침구 등
- 마.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, 기구, 서적 등
- 바. 병실의 바닥, 기구, 벽 등
- 사. 쥐가 서식하거나 지나다니는 장소
- 아.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또는 장소
- 자.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
- 차.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
- 카.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

5. 일본뇌염, 말라리아의 경우

- 가. 하수구, 고인 물, 잡초, 농수로 등
- 나.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
- 다.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
- 라.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
- 마.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